

이 관 영  
(주)한인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Young

##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및 행정문제 고찰 -건축제도개선과 협회의 역할-

### A Reflection on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Issues

- Institutional Reformation of Architecture and the Role of the Institute -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 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출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돋고자 한다. (필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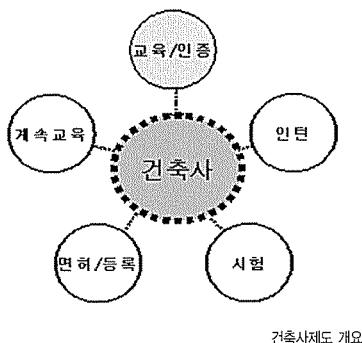
## 서 론

전문직 서비스분야의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서는 전문자격에 대한 상호인정(MRA<sup>1)</sup>)이 전제되어야 하며,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필요하게 된다.

UIA<sup>2)</sup>가 채택한 '권장안'도 건축사 자격에 관한 국제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1980년대에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직자격에 대한 상호인정경험이 있고, UIA의 '권장안'도 상당부분 EU의 경험을 참고하거나 수용하고 있다.

'권장안'은 건축사자격의 MRA를 전제로 한 국제기준으로서 건축사의 요건, 교육/인증, 인턴제도, 시험, 등록, 계속교육, 건축사윤리, 업무영역, 업무형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회원국들에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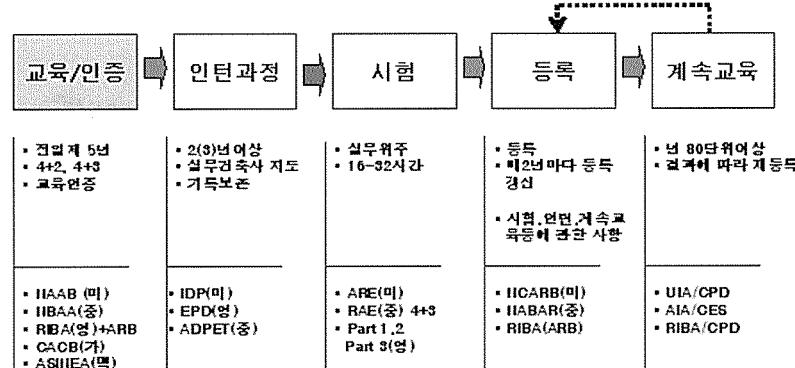
이들 기준은 앞으로 WTO에 의한 서비스시장개방에 있어서의 전문직자격 상호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 UIA권장안에 의한 건축사제도

UIA가 권장하는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교육/인증

기본적으로 전일제 5년이상의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하며, 학생수행능력(Performance of criteria)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증은 별도의 독립된 인증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UIA는 이를 인증기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인턴제도

교육이수자는 기본적으로 2년(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중) 이상 실무건축사 밑에서 인턴과정을 거쳐야만 건축사시험자격을 갖는다. 실무훈련내용과 평가방식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 시험

인증받은 교과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시험은 실무위주의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 등록

별도의 등록기구에서 등록업무를 관리한다. 등록기구는 등록업무 이외에도 교과과정의 자문, 인턴기록의 관리, 시험과니, 계속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계속교육 결과에 따라 2년마다 재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계속 교육

건축사로서의 자질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 UIA권장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건축사제도는 UIA권장안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혹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 권장안이 WTO의 서비스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자격 상호인정(MRA)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

- MRA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건축 교육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건축사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UIA권장안은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

이러한 합의에 따라, 현재 60여개 대학의 5년제 건축학과정과 상당수의 건축전문대학 원과정이 설치되어, 학회가 연구해온 모델을 기초로 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7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또한, FIKA를 중심으로 건축학교육인증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2) 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3)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 (건축 실무에 대한 국제기준에 관한 UIA 권장안)  
4) 학생능력수행평가기준(Performance Criteria)

현행 교과과정모델은 인증에 필요한 수행 평가기준<sup>4)</sup>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인증절차와 기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연구된 것이어서, 앞으로 인증원에서 확정될 수행평가기준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현행과정에 대한 인증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 외국의 인증제도

### • 영국의 인증제도

영국은 RIBA<sup>5)</sup>가 중심이되어 ARB<sup>6)</sup>와 함께 산하 위원회로 하여금 건축학교과정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RIBA의 국제 인증(RIBA International Validation)은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축교육의 최소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학생의 성취도에 있어서 우수성과 다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UIA권장안에서 보듯 '인증'을 Validation /Accreditation으로 병기하고 있는데, RIBA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여, Validation은 교수방법, 시설기준, 교수내용 등보다, 학생작품, 시험답안지 등 결과물을 중시하고 있다.

인증기준(Criteria For Validation)은 5개 영역 56항목으로 되어 있다.

RIBA는 EU를 비롯한 외국의 인정기구와 협력하며 CAA(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의 창립회원으로 영연방국가에 대한 인증업무를 지원한다.

외국의 많은 건축대학들이 RIBA의 기준을 선택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인증위원은 RIBA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며 3년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국

제인증판넬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2년까지 할 수 있다.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RIBA의 회원이어야 한다.

### • 미국의 인증제도

미국의 인증제도는 시험자격에 대한 제한 기준으로 1902년 일리노이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1903년 코넬, 컬럼비아, 하버드, MIT, 펜실바니아 대학 졸업생에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1912년 건축대학연합(ACSA<sup>7)</sup>)이 설립되자 연합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대학들이 만족시켜야 하는 최소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범국가적 기준으로 정립되었다. 1932년 ACSA가 이 기준을 포기함으로써 건축교육인증에 공백이 생기게 되자 미국건축가협회(AIA<sup>8)</sup>), 건축대학연합(ACSA), 미국건축사등록위원회(NCARB<sup>9)</sup>)에 의하여 1940년 인증원(NAAB<sup>10)</sup>)을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인증기준은 건축교육과 실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데 현재는 4개주제 39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조건 및 절차는 C&P (Condition & Procedure)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NAAB는 1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각각 ACSA, AIA, NCARB에서 3년임기의 이사 3인, AIAS<sup>11)</sup>에서는 2년임기의 이사 2인, 기타 3년 임기의 이사 2인으로 구성된다.

### • 중국의 인증제도

중국은 일찌기 건축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1994년부터 미국식 건축사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또한 2000년 북경 UIA총회유치를 계기로 '권장안' 마련을 위한 간사국으로서 권장안의 채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국립건축인증위원회(NBAA NBAA<sup>12)</sup>)는 미국의 NAAB를 모델로 하여 1994년 설립되었다. NBAA는 고등건축교육에 관한 국가운영위원회가 설치한 특별기구

로 정부 교육, 건설부처의 위탁을 받아 고등건축교육기관의 인증을 시행하고 또한 중국건축협회(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인증원은 건축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일련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을 수립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질 있는 건축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은 외국어 영역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등 4개 주제에 47항목으로 되어 있다.

NBAA의 위원은 ASC의 자문을 받아 고등건축교육에 관한 국가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로서 정부 건설주무부처에서 임명한다. 위원은 총 15인 이상 17인 이하로서 건설주무부처출신 2~3인, ASC출신 1~2인, 건축교육전문가 6인과 실무 건축사 6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정부의 건설·교육주무부서가 공동으로 제공하며 기타 인증신청기관의 인증수수료와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 우리나라의 인증제도

외국의 예에서 보면 영미 등은 인증제도가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직 제도의 설립배경과 역사가 나라마다 다른 때문이다.

5)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6) ARB(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7) ACSA(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 of Architecture)

8)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9) NCARB ( The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

10) NAAB (The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11) AIAS(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Students : 전미건축학생협회)

12) (The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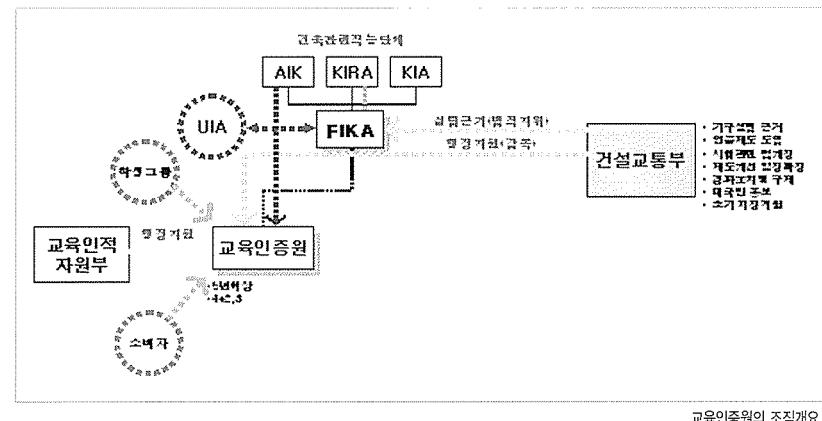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원의 조직과 구성은 미국의 NAAB를 모델로 하되, 행정적 지원은 중국의 NBAA에 가까운 절충형이 예상된다.

즉 건축학회(AIK), 건축가협회(KIA), 건축사협회(KIRA)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FIKA(The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가 인증원의 설립을 주도하되, 설립근거와 관련법규의 운용 등에 있어서는 관련주무부처가 행정적 지원감독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NGO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원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순수한 NGO의 자격으로 출발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 교육과정 및 전문학위 등과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증제도를 건축사제도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건축사법의 개정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건축설계서비스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면 이를 순수한 민간차원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인증제도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로서의 학생수행능력평가(output)에 그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즉 대학이 투입(input)하는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력,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



교육인증원의 조직개요

육기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인증원 설립 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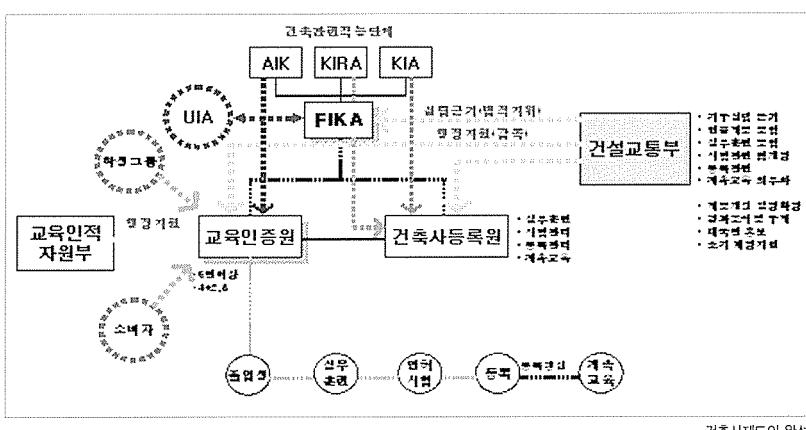
#### 새로운 건축사제도가 완성되려면

UIA권장안에 따른 새로운 건축사제도를 완성하기 위하여는 교육/인증에 필요한 인증원의 설립 뿐 아니라 실무훈련(IDP<sup>13</sup>), 시험, 등록, 계속교육(CPD<sup>14</sup>) 등을 관리운용할 (가칭)건축사등록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하다.

인증원이 발족되어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배출되는 예비건축사에 대한 실무훈련제도와 새로운 시험제도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일관성있게 연구하고 준비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기구로서 미국의 NCARB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건축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들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서두르지 않으면, 과정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모처럼 시도한 교육제도 개선노력이 빛을 잃게되고 말 것이다.

본격적인 인증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인증절차에서 보듯 최소한 1회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여야 하고, 인증신청에서 판정통보에 일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인증제도 자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정착초기에 UIA 등 국제 인증기관과의 공동인증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증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적어도 이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인증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소한 미비점은 경과규정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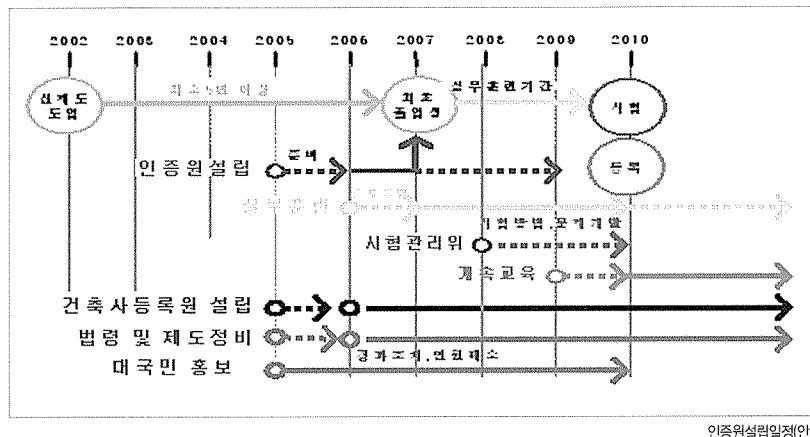


#### 그 밖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인증제도 마련을 위하여, 건축계가 FIKA를 중심으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13) IDP(Intern Development Program)

14)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그러나 본격적인 인증원 설립에 이르기까지는 건축계 전반의 합의와 관련부처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제도시행일정에 대한 정확한 예보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현행제도하에서 시험자격을 갖춘 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여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인증제도의 출발로 비롯된 새로운 건

축제도의 완성을 위하여는 이에 뜻지않은 건축계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지 않는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 결 론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새로운 건축사제도의 정립을 위하여는 우리 협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건축교육이 궁극적으로 건

축사가 되기위한 과정이라면 학생수행능력평가단계 뿐 아니라 교과과정 편성에도 건축사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곧 졸업할 학생들을 위하여는 인턴제도, 시험관리를 위한 등록기구의 설립도 협회가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현재의 협회 체재와 성격으로 등록기구의 역할이 가능한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건축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협회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능동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건축경기의 침체와 설계시장의 불황으로 건축사의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라 하지만, 장래 배출될 후배 건축사를 위하여 기성건축사의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않된다.

새로운 건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협회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은 물론 건축사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

## 정회원(월정)회비 납부안내 및 징계예고

본 협회 제38회 정기총회(‘04. 2. 26)에서 정회원(월정)회비를 장기 미납한 회원에 대한 징계처리 안이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회비 장기미납회원들께서는 미납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회비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총 회 의결내용 (‘04. 2. 26)	<p>가. 징계대상 : 본 협회 정회원(월정)회비를 5년(60개월)이상 장기 미납한 회원            나. 징계종류 : 제 명            다. 징계방법 및 미납회비 처리            - 총회개최일(‘04. 2. 26)현재 5년 이상 정회원회비를 장기미납한 회원은 3개월간의 회비납부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는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제명처리            - 제명처리 된 자의 미납된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손처리            라. 관련근거 : 정관 제55조제1항제3호            &lt;참 고&gt; 2003년도 회비장기미납자 제명            - 제명인원 : 103명(서울 101명, 경기 2명)      - 제명사유 : 5년(60개월)이상 회비 장기미납자      - 제 명 일 : 2003. 8. 9</p>
미납회비 납부안내	<p>○미납회비 납부기한 (‘04. 5. 25)            - 총회 승인일(‘04. 2. 26)부터 3개월 이내            ○개인별 회비 미납금액 확인 및 납부            - 회원의 소속건축사회 회비수납 담당자에게 미납개월수 및 미납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건축사회에 납부하면 됨</p>
참 고	<p>○제명 또는 퇴회한 자는 정관 제11조제4항에 의거 본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경비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폐업회원에게 지급하는 폐업위로금 혜택 없음            ○회원 신상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이 협회에 변경사항을 미신고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아니함</p>